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3. 3. 7 선고 2022가단23635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

담당변호사 이주현, 윤대웅, 유태용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3. 1. 31.

판 결 선 고 2023. 3. 7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7. 5. 19.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에게 제1항의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.
3. 피고는 원고에게 114,640,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4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5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,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14,640,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

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3. 일부 기각하는 부분: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 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,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(대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7다61618 판결 참조),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.

판사 신혜원

별지